##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280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황명선·김태년·박희승

장철민 · 전현희 · 민병덕

김남근 • 맹성규 • 박용갑

황정아 · 차지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법률 제 호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거쳐야"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로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고"를 "서면으로 통고"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장)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 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의 심의를 <u>거쳐야</u> 한다.	거쳐 재적위원 과반의		
	<u>동의를 얻어야</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u>통고</u> (通告)하	<u>서면으로 통고</u>		
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14조(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보		
	장)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		
	<u>장하여야 한다.</u>		
<u>제14조</u> (생 략)	<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